

제 256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1.4.7.)

#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중 호]

#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2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21. 3. 30.

## 2. 제안사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한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받기 위함.

## 3. 2021년도 기금 변경(안)

###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나. 주요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년도말 조성액①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21년도말 조성액 ②=③+ ①	비고
	수입 ②	지출 ③	증감 ④=②-③		
152,560,000	12,720,480	60,000,000	△47,279,520	105,280,48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 ㉑	용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㉓	총 조성규모 ㉔=㉑+ ㉒-㉓
105,280,480	-	-	105,280,480

○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20년도말 조성액㉑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21년도말 조성액 ㉔=㉑+ ㉒	비고
	수입 ㉒	지출 ㉓	증감 ㉔=㉒-㉓		
500,565	12,004	12,000	4	500,569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21년도말 조성액 ㉑	용자금 미회수채권 ㉒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 잔액㉓	총 조성규모 ㉔=㉑+ ㉒-㉓
500,569	-	-	500,569

4. 기금운용 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2020년말 조성액 ㉑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㉔=㉑+㉒-㉓	증감 ㉔=㉔-㉑
		수입 ㉒	지출 ㉓		
합계	153,060,565	12,732,484	60,012,000	105,781,049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52,560,000	12,720,480	60,000,000	105,280,480	△47,279,520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500,565	12,004	12,000	500,569	4

## 5. 검토의견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담당관>[p1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등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소득증대, 대형 프로젝트 사업추진에 필요한 200억원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 아림예술제진흥기금<문화관광과>[p18]

- 아림예술제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거창군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 화합, 역사와 전통의 거창아림예술제 진흥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올해는 아림예술제 60주년으로 그동안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겨 군민들과 함께 향유하고자 ‘아림예술제 60년사’ 도서 발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제50주년 아림예술제 아림예술마당 행사지원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